〔일련번호 : 29〕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전결처리 및 재정합의 미이행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 전결 및 재정합의 이행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조(목적)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5조(전결대상사무)에 의거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사항은 별표2에 따라 전결권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전 결 권 자	비 고
7. 물품제조· 구매 품의 (공개경쟁,수의계약,조달)	가. 1건당 1억원 이상	부구청장	
	나. 1건당 5,000만원 이상	국장	
	다. 1건당 5,000만원 미만	과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재정사항의 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표 2> 제5조제1호에 따른 재정합의 대상경비

구 분	금 액	합 의 서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건당 3억원 이상	기획재정국장
	건당 5천만원 이상	재무과장
	건당 5천만원 미만	담당주사
물품 제조, 구매	**건당 1억원 이상**	**기획재정국장**
	건당 3천만원 이상	재무과장
	건당 3천만원 미만	담당주사
업무추진비 등	건당 5천만원 이상	기획재정국장
	건당 3천만원 이상	재무과장
	건당 3천만원 미만	담당주사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시 기획재정국장 협조 및 부구청장 전결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아래 표와 같이 전결규정 및 재정합의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사무전결 및 재정합의 부적정 내역

일자	적요	계약금액(원)	부적정 내역
2022.06.17.	관급자재비 납부(자연석판석, 포천석)	137,420,300	과장전결 지출팀장까지만 협조
2022.06.30.	관급자재비 납부[관내 도로 포장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2차]	114,590,680	과장결재 지출팀장까지만 협조
2023.12.18.	관급자재 대금납부[2023년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아스콘7회]	129,769,010	기획재정국장 미협조
2023.04.12.	관급자재 대금납부(목동가온길- 자연석판석, V자가공(3차))	152,012,560	과장전결 지출팀장까지만 협조
2025.06.20.	관급자재 대금납부[관급자재 구매[2025년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연간단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1회)	204,464,440	과장전결 지출팀장까지만 협조
2025.06.04.	관급자재 대금납부[관급자재(승객용엘리베이터) 구매(양원보도육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75,387,000	국장전결/ 기획과장까지만 협조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사무전결처리 및 재정합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